



보도 일시	2022. 9. 20.(화) 09:00 (화요일 석간)	배포 일시	2022. 9. 20.(화)
담당 부서	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	책임자	과 장 김상훈 (044-201-7421)
		담당자	사무관 곽정규 (044-201-7427)

## 폐기물 수출입,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

### -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,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‘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일부개정안이 9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.
- 현행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개월 이내 기간의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.
-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었다.
- 이에, 이번 개정안은 중소 폐기물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포괄허가제를 이용하는 경우,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.
-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,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뿐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방식을 개선했다.

- 수출입자가 허가 등을 받을 때에는 최초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고, 이후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를 할 때 해당 물량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유역(지방)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.
-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.
-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“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제도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면서, “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내용. 끝.



□ **배 경**

-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(신고)\* 관련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\*\* 가입방식을 개선하는 등 영세 폐기물 수출입업자 부담 완화(영세업체 건의 반영)

\* 포괄허가(신고) : 12개월의 범위내에서 2회 이상 수출입시 한꺼번에 허가(신고)

\*\*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('18) 등 계기로 폐기물 수출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('21.4.1~)

□ **주요 개정내용**

-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(신고) 관련 **보증보험 가입방식** 개선으로 부담 완화 (시행령 안 제3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7조의2제1항, 제17조의2제2항)

-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(신고)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**전체기간의 수출입량** 또는 ②**기간을 나눠서** 보증보험을 선택·가입할 수 있도록 함

\* (기존) 포괄허가 시 ①**전체기간의 수출입량** 보증보험 가입



(개정) 포괄허가 시 ①**전체기간 수출입량** or ②**기간을 나눠서** 보증보험 선택·가입

□ **기대효과**

- 폐기물 포괄 수출입 허가(신고)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시 기간을 나눠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부담 경감

□ **향후계획**

-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(공포일~)
- 폐기물 수출입자 등 이해관계자 대상 안내('22.9~)